중앙대학교 예술대학(서울) 반폭력 회칙

2023.10.0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회칙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서울) 내의 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명문화하여 폭력적인 문화로부터 해방된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인권 관련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②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인권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한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폭력을 가하는 행위
 - 2. 성별 또는 성적 지향의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
- ③ '폭력'이란 피해자의 자율성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폭력 등이 있다.
- ④ '물리적 폭력'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포함한다.
- ⑤ '정신적 폭력'이란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 또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이다. 언어적 폭력, 권위주의, 차별, 구조적·상황적 폭력 등이 있다.
- ⑥ '성폭력'은 행위의 의도와 무관하게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강제적인 성적 행위 및 요구, 성적 지향성의 자율성 침해, 성적 대상화 및 성차별에 기반을 둔 행위를 가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 ⑦ '피해자'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 ⑧ '신고인'이란 인권침해의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⑨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⑩ '당사자'란 피해자 및 피신고인을 말한다.
- ① '대리인'이란 피해자가 자신의 발언권을 대리하도록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전 과정에서 대리인이 활동할 수 있으며 다음을 따른다.
 - 1. 대리인은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닐 경우에만 가능하다.
 - 2.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사람,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이는 대리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한다.
 - 3. 당사자의 반대가 없을 시 사건을 관할하는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는 사건 전반에 있어서 대리인의 참가를 허가한다. 그러나 피신고인의 반대가 있을 시 사건을 관할하는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는 반대 의견의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논의, 절차에 따른

의결로 대리인 참여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면의 양식은 사건을 관할하는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에 따른다.

- 4. 대리인은 사건 처리 절차에 있어 피해자와 같은 권리를 지닌다.
- 5. 제3자인 대리인은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 ② '신뢰인'이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동반하여 사건 과정의 전반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③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및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④ '최종접수인'이란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사건의 공론화 여부와 방식, 사건 해결방식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회칙 상의 최종접수인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동으로 속해져있는 단위의 대표자이지만, 각 단위의 회칙이나 내규 또는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최종접수인을 결정할 수 있다. 각 전공 대표자가 최종접수인이 될 시 해당 전공의 회칙이나 내규에 따라 사건 해결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⑤ '관계당사자'란 당사자와 신고인, 대리인, 신뢰인, 참고인 등 사건과 관련된 자를 말한다.
- (⑥ '대표자'란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정·부학생회장, 전공 정·부학생회장, 각 전공 학년 대표를 말한다.
- ① '사건'이란 당사자가 모두 명확할 때를 의미하나 공동체의 논의를 통해 둘 중 하나만 명확해도 사건이라 볼 수 있다.
- ⑱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 1. 인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사건 조사행위
 - 2. 신고인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계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 3. 신고인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 4. 고의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 5.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 6. 기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제3조 (대상)

- ①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서울)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서울) 학과(부)/동아리/전공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 실질적 일원과 졸업생 등을 포함한다.
- ② 사건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해당될 때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범이 없는 한이 회칙을 적용한다.

제4조 (분쟁의 해결)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술대학학생대표자회의, 예술대학운영위원회, 또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해석에 따른다.

제2장 의무와 권리

제5조 (공동체의 의무와 책임)

회원을 비롯한 공동체의 실질적인 구성원은 폭력을 비롯하여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언행을 삼 가며,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 ① 사건 예방 및 반폭력 문화 조성의 책임
- ②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
- ③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책임

제6조 (대표자의 의무와 책임)

- ① 반폭력 회칙 작성과 공표 및 적극적 제·개정의 책임
- ②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무
- ③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
- ④ 제11조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 이행을 방임하지 않을 의무

제7조 (자의적 조치)

명문화된 절차 또는 공동체의 논의를 통하지 않고 개인 또는 집단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관계 당사자와 담당자, 공동체에 대해 압력과 폭력 등의 자의적인 조치를 가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피해자 보호)

- ① 대표자와 공동체는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는 사건의 신고로 인하여 학과 활동 및 학업 전반 등 일체의 사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무)

관계 당사자 및 대책위를 포함한 사건 처리에 관여한 모든 자는 당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협력의무)

- ① 당사자는 당사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② 당사자가 속해있는 단위는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피해자가 속한 단위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신고인이 속한 단위는 공동체의 인식 변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당사자가 속한 단위는 사건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11조 (권리)

- ① 관계 당사자들은 다음의 각호와 같은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역시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1. 발언할 권리: 사건을 신고할 권리, 평가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해결 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사건 평가

- 이전에 선규정을 당하지 않을 권리
- 3. 안전할 권리: 위협이나 괴롭힘, 사적 보복 및 기타 통제되지 않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건의 왜곡이나 와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에서 보호받을 권리,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는 요구나 질문을 거부할 권리,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고통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권리
- 4. 조력을 구할 권리: 당사자들의 신상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에서 사건에 대한 자문을 구함 권리
- 5. 문제를 제기할 권리: 사건 해결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을 때 시정을 요구할 권리와 그러한 요구에 대해 비난받지 않을 권리
- ② 피해자는 제11조 제1항의 보편적 권리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1. 치유와 회복의 권리: 공간 분리 등 삶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적 배려를 받을 권리, 공동체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체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
 - 2. 존중받을 권리: 성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과민한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기타 모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 3.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 절차에 신뢰인을 동반할 권리,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특정인과의 대면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기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
- ③ 피신고인은 제11조 제1항의 보편적 권리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1. 소명할 권리: 사건의 경위와 맥락에 관해 소명할 권리
 - 2. 존중받을 권리: 성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기타 모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 3.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기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할 권리
- ④ 신고인은 제11조 제1항의 보편적 권리와 더불어 사건의 접수에 있어서 익명으로 신고할 권리, 허락 없이 신상을 유출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⑤ 사건 해결 주체는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장 기관 제1절 예술대학 인권복지국

제12조 (위치)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서울) 집행위원회의 부서이다.

제13조 (구성)

- ① 인권복지국장(이하 인복국장)은 예술대학(서울) 재적생으로 학생회장이 임명하여 예술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예운위)에서 인준한다.
- ② 인권복지국(이하 인복국)은 국원을 둘 수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국원은 예술대학 (서울) 재적생으로 학생회장의 동의를 받아 인복국장이 임명한다.
- ③ 인복국은 국원의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역할)

- ① 인복국은 학내 구성원의 성평등 의식과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한다.
- ② 인복국은 예술대학 소리함, 카카오톡 채널을 관리한다. 예술대학 소리함과 카카오톡 채널은 공동으로 관리하며, 관리자는 학생회장과 인복국장, 인복국 국원이다. 건의에 대한 처리 방식은 인권복지국 운영 규정을 따르며, 신고는 최종접수인에게 인계한다.

제15조 (임기 종료)

정(부)학생회장의 임기 종료시 인복국장, 인복국 국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제2절 대책위원회

제16조 (설치)

사건의 신고가 접수되거나 제2조에서 규정한 폭력에 해당되는 사건을 인지한 경우, 최종접수 인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대책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 (구성)

- ① 대책위 위원은 예술대학 집행위원회 중 3인 이상, 6인 이하로 구성하며, 전문가를 포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② 대책위는 사건 관련인을 제외하여 구성한다.
- ③ 대책위 위원장은 대책위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선출한다.

제18조 (제척)

대책위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책위에서 제척된다.

- 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 경우
- ②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인 경우
- ③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경우
- ④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신고인이 되는 경우
- ⑤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 ⑥ 그 외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책위의 자체 회의를 통해 제척 판단이 이뤄진다.

제19조 (기피)

당사자는 대책위 위원의 기피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피 신청은 제18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당 각 1회에 한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며, 기피신청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책위는 기피신청서 및 사유서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역할)

대책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사건의 조사 및 처리
- ② 심리적, 법적,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안내
- ③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21조 (개의 및 의결)

- ① 대책위는 해당 사건 대책위 위원 2/3 참석으로 개의한다.
- ② 대책위는 해당 사건 대책위 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제22조 (대책위의 의무와 책임)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인의 요구를 존중하며 조사 및 처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한다.

제23조 (권리)

대책위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 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 ② 사건 당사자들의 출석을 요구할 권리

제4장 사건의 해결

제24조 (공동체적 해결)

- ①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은 공동체적 토론과 실천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의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 성차별적인 인식이나 문화 등 공동체의 잘못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 대표자는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 ② 공동체가 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사건을 공론장에 상정한다는 뜻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공동체에 폭력 사건이 신고된 사실과 신고 내용의 대략을 알리고 해결의 절차와 역할분담 등을 논의함을 의미한다.
 - 1. 공개의 범위: 사건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정한다. 단, 최종접수인은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해결의 주체들과 공유해야 한다. 최종접수인은 사건 논의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사건 당사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2. 해결 절차의 결정 : 공동체는 당사자의 의사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건 해결 절차를 정해야 한다.

제25조 (사건의 신고)

사건의 신고란 사건의 발생을 알리고 적절한 해결의 절차를 요청하는 행위이다.

- ① 신고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임한 피해자의 대리인, 사건을 인지한 구성원이 할 수 있다.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닐 경우 피해자에게 신고 의사를 물어보아야한다.
- ② 예술대학 학생회로 직접 신고는 직접 방문, 전화, 예술대학 소리함, 예술대학 인권복지국

카카오톡 채널 등 모든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학년 대표, 전공 학생회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모든 신고는 최종접수인에게 인계된다.

제26조 (신고의 각하)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2. 신고내용이 단순한 불편사항, 불친절 행위, 일방적 불만 제기 등 단순 민원 등의 경우
 - 3. 특정 진술을 채택할 수 없는 경우: 사건 경위를 확보하는 절차 중 양쪽 진술이 모두 일관적이고 타당하며 한쪽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사건의 최종접수인은 어떤 진술도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밝히고 이러한 결정을 공동체 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인준받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최종접수인은 신고 접수 포기의 이유를 명시하여 신고 접수 포기 발표 직후 48시간 내에 특정 진술 채택 포기의 이유를 알리고 사건 당사자에게 신고 반려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또한 사건 당사자와의 논의를 거쳐 해당 사건을 다룰 인권센터 등 전문 기관에 조속히 사건을 이관하여야 한다.
 -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위 사유에 해당하나,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 각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사건의 처리)

- ① 최종접수인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체 내에서의 사건의 처리 및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 ② 사건 처리는 되도록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대책위는 당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신고를 접수한 이후, 최종접수인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인권센터로 해당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 ④ 대책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 (사건의 조사)

대책위의 조사 범위는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 구조적 문제와 공동체적 책임 확인 까지를 포함해야한다. 조사는 양 당사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되,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에 묻히거나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① 제17조에 따라 대책위가 구성되면 피해자 또는 신고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다.
- ② 사건 조사의 전 과정은 최대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사자와 협의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하거나 재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조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와 신고인에게 연장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대책위는 사건 신고가 접수된 7일 이내에 피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신고 접수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고 소명 방법을 안내한다.

- ④ 대책위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인권센터 등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⑤ 신뢰인의 입회는 피해자의 요청에 있어서만 가능하며, 의사를 표명할 권리를 일절 가지지 않는다.

제29조 (소명)

- ① 피신고인은 대책위의 소명 안내 이후 최대 7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책위 출석을 통해 직접 소명에 나서야 한다.
- ② 피신고인이 지정된 소명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및 신고인의 진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 ③ 대책위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사건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관계자의 진술 및 출석,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관계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충실히 임한다. 조사 과정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책위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 (임시 조치)

최종접수인 또는 대책위는 피해자 및 신고인에게 사건 처리에 관한 요청 사항과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 피해자 및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공간분리 및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해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건 처리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피신고인의 공동체 행사 참여를 임시로 금지할 수 있다.

제31조 (사건의 평가)

사건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드시 포함한다.

- ① 사건 평가에 앞서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사건 경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② 사건 경위가 밝혀지면 대책위는 사건이 문제적인지, 문제라면 어떤 점에서 문제적인지,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는지, 공동체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 사건의 성격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 1.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 평가 과정은 사건 해결의 주체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야 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2. 사건의 기록: 사건 해결의 주체는 개인 정보를 제외한 사건의 경위와 해결 과정, 토론에서의 쟁점들을 공식적, 공개적 기록으로 남기고 보관하여 이후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32조 (공동체적 조치)

- ① 대책위는 공동의 평가에 기반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치, 후속 토론, 평가서 및 입장서 발표, 공간 분리 등의 실천적인 조치를 취한다. 조치는 공동체적 논의를 거쳐야하며, '공동체적 해결'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 1. 피해자 중심적 해결: 사건 조치 도출의 과정에서 대책위는 '피해자 중심적 해결'에 입각하여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자 중심적 해결은 사건을 해석할 때 가해자의 의도, 경험보다는 피해 당사자의 진술, 경험, 관점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 2. 입안의 절차: 최종접수인을 포함한 학생회 또는 대책위의 논의를 통해 조치 도출을 위한

공동체적 논의의 장을 열 수 있다. 일시와 진행방식을 비롯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최종접수인을 포함한 학생회 또는 대책위, 피해자와 가해자를 비롯한 관계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정한다.

② 대책위는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상담을 수행하고 조사 결과 및 징계 수위, 사건처리에 대한 결정사항을 예술대학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3조 (가해자에 대한 조치)

- ① 대책위는 다음 각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비공개 사과문
 - 2. 공개 사과문 : 성(姓)을 포함한 사과문을 온·오프라인 게시하는 것을 의미.
 - 3. 학생 자치 공간 출입 금지 : 일정 기간을 특별히 명시할 수 있음.
 - 4. 학생 자치 행사 제외 : 학생 자치 기구에서 진행하는 사업 참여를 금하는 것을 의미
 - 5. 학생 자치 활동 제외 : 학생 자치 활동으로 인정되는 집행위원회(집행부, 집행국 등), 소모임 등의 활동을 금하는 것을 의미.
 - 6. 피선거권 박탈
- ② 결정된 조치는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조치의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해결 방안 도출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졌을 때는 사건 해결의 주체는 이를 공론장에 다시 상정할 수 있다.

제34조 (사건 해결의 원칙)

사건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 ① 접수된 사건은 공동체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 1. 해결의 목적: 공동체적 사건 해결의 목적은 공동체의 정의와 정의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평등하고 해방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
 - 2. 공적 해결: 공동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인권 침해를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인권 침해는 공적인 문제이며, 공동체가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공동체는 사건에 관련해 함께 반성하고 행동을 시정할 책임이 있다.
- ② 사건 해결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 1. 투명성: 사건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사자들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으로 공개의 내용 및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2.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토론과 평가: 공개된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권위나 친분, 사회적 편견, 현대적인 사회 상규와 상식에 맞지 않는 오래된 관습에 의한 금기 등의 비합리적 요인들이 토론을 가로막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5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서울) 학생회칙'의 개정 절차 요건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이 규정의 제정 이전에 발생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사건에도 적용된다.